

나. 과태료 부과 통보와 과태료 부과 취소

1) 과태료 부과 통보

- ◆ 조사기관은 신고를 받거나 이첩받은 경우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 등을 하여 **과태료 부과 대상인 경우 소속기관에 통보**
 -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내용을 확인하여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속기관에 이첩
- ◆ 소속기관장은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해 그 위반 사실을 **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**하고, 지체 없이 **과태료 부과 대상자에게 통지**
 - 다른 공공기관에 소속된 공직자등인 경우에는 그 소속기관장에게 함께 통지
 - ※ 유사 입법례(공직자윤리법)
제30조(과태료) ④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는 그 위반 사실을 「비송사건절차법」에 따른 과태료 재판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.
- ◆ **소속기관장은 위반행위를 한 소속 공직자등 뿐만 아니라 부정청탁을 하거나 금품등을 제공한 민간인도 통보**
 - 소속기관장은 공직자가 **자진 신고한 경우에도 명백히 부정청탁이 아니거나 수수 금지 금품등 제공이 아닌 경우 외에는 청탁을 한 자나 금품등 제공자도 통보**
 - 부정청탁을 하거나 금품등을 제공한 **다른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등에 대하여도 통보**
- ◆ 위반행위를 한 공직자등이 지체 없이 소속기관장에게 자진하여 신고를 하였거나 금품등을 반환하여 제재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**제공자의 위반행위는 성립**
 - 자진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제공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통보 필요
- ◆ **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**(다수인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최종행위가 종료된 날)부터 **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음**(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조제1항)

2) 과태료 부과 취소

- ◆ 과태료 부과 전 「형법」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음
 - 과태료를 부과받은 후 「형법」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과태료 부과를 취소
 - ※ (예시) 100만원 이하 금품 수수를 이유로 과태료가 부과된 후 대가성이 밝혀져 「형법」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금품 수수 사실이 드러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등
- ◆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도 「형법」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청탁 금지법상 과태료 부과 취소규정(법 제23조제1항제1호 단서, 같은 조 제2항 단서, 제3항 단서 및 제5항 단서)을 근거로 과태료 부과 취소 가능
- ◆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자의 신청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를 취소
 - 과태료를 부과받은 자의 취소신청은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의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
 - 과태료 부과 취소신청을 하려는 자는 인적사항과 신청의 취지 및 이유를 적은 서면과 함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제출

다. 양벌규정

1) 양벌규정과 적용 제외

- ◆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면 양벌규정(법 제24조)에 따라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사업주(개인, 단체 및 법인 포함)도 제재
- ◆ 법인 소속 임직원의 금품등 제공행위가 「형법」상 증뢰죄에 해당하는 경우 「형법」에 양벌규정이 없으므로 법인도 처벌될 수 있도록 청탁금지법 위반도 성립하면 함께 기소 필요
 - 소속기관장은 대표자 등이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경우 그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이 명백히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 외에는 그 대표자 등 뿐만아니라 그 법인·단체 또는 개인도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 또는 수사기관 통보